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469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주영 · 박균택 · 안호영  
임호선 · 이학영 · 문정복  
김태선 · 어기구 · 서삼석  
박 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

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

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제  
445조).

아.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대하여 자산총  
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 첫 3개 사업연도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  
징금 면책 부여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의 확보 및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기재는 주권상장 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

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0조의2부터 제17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70조의4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0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

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등) ①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요건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의5(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 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소속 전문가는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⑤ 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 기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의6(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17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그 소속 전문가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9조의2제2항 중 “제445조제22호의2”를 “제445조제22호의4”로 한다.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59조제7항”을 “제15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7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증받은 자

22의3. 제17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조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2.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3.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4.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제3조(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2.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3.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3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4.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지속가능성 공시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br>① (생략)<br>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br><br>5. (생략)<br>③ ~ ⑦ (생략) |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u>4의2.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br>5. (현행과 같음)<br>③ ~ ⑦ (현행과 같음) |
|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                     |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br>-----<br>-----<br>-----<br>-----<br>-----<br>-----<br>-----                                                                                                                                      |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 <신 설>

-----반기보고  
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  
의2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  
4호의2를 각각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 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



다)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의 확보 및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기재는 주권상장 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기업기본법」

<신 설>

<신 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70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제  
출 전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제170조의4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속가  
능성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0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  
준”)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국  
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  
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성 인  
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의 등록 등) ①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대하여 타

<신 설>

<신 설>

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요건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의5(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인

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결과를 기술한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소속 전문가는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신 설>

⑤ 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 기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의6(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17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

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  
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                                                                                                                                                                                                                                    |                                                                                                                                                                                                                                                                                                                                                                |
|------------------------------------------------------------------------------------------------------------------------------------------------------------------------------------------------------------------------------------|----------------------------------------------------------------------------------------------------------------------------------------------------------------------------------------------------------------------------------------------------------------------------------------------------------------------------------------------------------------|
|                                                                                                                                                                                                                                    | <u>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u><br><u>3. 경고</u><br><u>4. 주의</u><br><u>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u><br><u>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u><br><u>조치</u><br><u>④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u><br><u>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u><br><u>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u><br><u>사에 관하여 준용한다.</u><br><u>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u><br><u>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u><br><u>증기관 및 그 소속 전문가에</u><br><u>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u><br><u>다.</u> |
| 제429조의2(불공정거래 행위 등에<br>대한 과징금) ① (생 략)<br>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br>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br>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br><u>제445조제22호의2</u> 에 따라 벌금<br>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br>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br>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br>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br>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429조의2(불공정거래 행위 등에<br>대한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u>제445조제22호의4</u> -----<br>-----<br>-----<br>-----<br>-----<br>-----                                                                                                                                                                                                                |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

-----

-----

-----

-----

-----

-----제159조

제8항-----

-----

-----

-----

-----

-----

-----

-----

-----

|                                                                                                                                                                                                                                                                                            |                                                                                                                                                                                                                                                                                                                                                                                               |
|--------------------------------------------------------------------------------------------------------------------------------------------------------------------------------------------------------------------------------------------------------------------------------------------|-----------------------------------------------------------------------------------------------------------------------------------------------------------------------------------------------------------------------------------------------------------------------------------------------------------------------------------------------------------------------------------------------|
| <p>가. ~ 다. (생략)</p> <p>라. 제159조에 따른 <u>사업보고서</u></p> <p>마. ~ 사. (생략)</p> <p>14. ~ 29. (생략)</p> <p>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22의2.</u> (생략)</p> <p>23. ~ 48. (생략)</p> |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사업보고서(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14. ~ 29. (현행과 같음)</p> <p>제445조(벌칙) -----</p> <p>-----</p> <p>-----.</p> <p>1. ~ 22. (현행과 같음)</p> <p><u>22의2. 제17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증받은 자</u></p> <p><u>22의3. 제17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u></p> <p><u>22의4. (현행 제22호의2와 같음)</u></p> <p>23. ~ 48. (현행과 같음)</p> |
|--------------------------------------------------------------------------------------------------------------------------------------------------------------------------------------------------------------------------------------------------------------------------------------------|-----------------------------------------------------------------------------------------------------------------------------------------------------------------------------------------------------------------------------------------------------------------------------------------------------------------------------------------------------------------------------------------------|